이　　유

1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의 주장

○ 작년 10월부터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저녁 10시 이후 삼가 달라고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함

○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경비실에 부탁하면 그 당시엔 잠시 조용하다가 다시 시작되어 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잘 수가 없으며, 새벽 1시~2시, 심지어 4시에도 물 심하게 붓는 소리, 덜거덕 거리는 소음으로 피해가 심함

○ 5월 봄에 참다못해 처음 올라가서 좀 소음이 심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사 가라고 말하면서, 자기네가 아니라 12층에서 그런 거라 핑계를 대는데, 12층은 아무 소리가 안 나며 떠드는 사람이 없었으며,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주의하겠다고 하여 내려왔으나, 도로 마찬가지였음

○ 2번째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며, 그 뒤로도 반복적 소음을 내며,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도 미안하다는 말뿐 그때뿐임

○ 세 번째 올라가서 남편이 걸음을 걸어보는 시험을 했더니, 화장실 앞, 주방 앞의 방향에서 듣던 소음과 똑같은 소음이 났음

○ 위층 부부와 딸은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뿐이고 다음날 같은 소음이 나고 해서 네 번째로 관리실에 이야기하고 안내문 부착도 무시되고,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 치면 그 당시엔 잠시 잠잠하다가 제가 TV 뉴스 등을 볼 때면 아주 쿵쿵거리며 뛰어 다님

○ 2주간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하고 7월 25일 소음측정을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초과로 나왔으니 삼가 달라고 하고, 공동주택이므로 정 이렇게 살 거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 했음

○ 제가 말한 거에 아무 반응도 없으며, 그냥 자기네 위주요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며, 이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며 인격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엄청난 피해를 봄

나. 피신청인의 주장

○ 2017년 10월 말경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딸과 대화중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한다는 경비실의 인터폰이 와서 시끄럽게 한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어디서 쿵쾅 소리를 저희도 들었음

○ 출근시간으로 바쁜 11:40분경 아래층에서 올라와 다짜고짜 “좀 조용히 해주시죠” 라는 말을 언성을 높여 말하기에 며칠 전에 가만히 앉아 대화 외에는 없었고, 딸은 고3 수험생, 저는 집필시간이 많아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음

○ 10여일 후에 잠자는 중에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달라는 소리에 화가나 잠옷 채로 아래층에 내려가 우린 자고 있으니 집에 오지도 말고, 인터폰으로 연락 말라고 당부하였고, 큰애는 군대가 있고 다 큰 딸아이와 지내는데 뛸 사람이 없으니, 9층이나 12층 등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음

○ 그 후 몇 개월 후 9시쯤 두 분이 찾아 오셔서 우리는 교육에 종사하며, 쿵쾅 소리 내며 걷지 않는다며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으며, 아래층 아주머니는 문소리, 쿵 소리, 드럼소리, 물내려가는 소리, 서랍 여는 소리 등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으나, 우리는 드럼도 없고, 큰아인 군입대, 딸은 알바로 11시 넘어 오고하여 이 시간엔 거의 혼자 있는 일이 많아 조용할 시기가 지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으며, 직접 화장실과 바닥 충격음을 가해 확인도 했음

○ 복도식이다 보니 어느 층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다고까지 아래층에서 이야기도 하였으며, 저희도 여러 소리를 듣지만 참았으나, 소리가 나면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고 하기에 우리가

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 저희도 스트레스가 있으며 아래층 아주머니가 어딘지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행동에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음

○ 집을 비운 4일간의 층간소음 측정에서도 소음이 초과된 사실이며, 계속해서 소음이 난다고 얘기고 골프채로 치는 행위로 소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활의 조심성으로 눈치를 보게 되어 기초적인 생활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었음

○ 이번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정의가 되었음을 강력히 원하는 바이며, 이제까지도 그래도 이웃이라 생각 하였지만 저희들도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에 책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생활에 큰 어려움까지 생기게 되었기에 기초적인 생활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참지 않고 정식으로 요구하려 함

2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현황

○ 당사자 주거공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단위 공동주택(아파트)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나,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00로 및 00로(왕복6차선)와 접하고 있어 교통소음의 영향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님

나. 당사자 주거 아파트 현황

○ 위　　치 : 00동720 0000단지
○ 규　　모 : 지하1층, 지상15층
○ 전용면적 : 59m^2
○ 주 용 도 : 아파트
○ 용도지역 : 제3종일반주거지역
○ 구　　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○ 사용승인 : 1988.5.13.

3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층간소음 피해 평가

○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함

- 측정일시 : 2018. 7.12.(목) 14:27 ~ 7.12(목) 21:28
- 측정기관 : 000보건환경연구원
- 측정지점 : 1003호 거실(신청인)
- 측정구분 : 직접 충격소음 분석

4. 판 단

○ 당사자 주거 아파트는 88년 5월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층간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층간 슬라브 두께의 취약한 구조 및 실내 모든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문틀과 문이 잘 맞지 않아 소음이 발생될 위험성이 높은 주택의 구조이며

○ 공동주택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고, 피신청인이 일으키는 소음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며

○ 또한 차량통행이 덜하고 배경소음도가 낮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낮은 소음도 그대로 층간으로 전달되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는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

○ 층간소음도 평가결과 1분 등가소음도가 최대 37.2dB(A), 직접충격 최대 소음도가 주간에 55.4dB(A)로 수인한도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 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5. 결 론

○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, 관련서류,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